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2. 23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2.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2.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3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000만원
-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등
  - 2만원 ~ 50만원 ⇒ 5만원 ~ 100만원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투기행위별 과태료기준의 60 ~ 20% 지급(생활폐기물에 한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답
<p>○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p> <p>○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폐지되면 포상금지급제도는 자동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는데 종량제 제도를 폐지할 의향은?</p> <p>○ 담배꽂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만이라도 재떨이를 설치할 의향은?</p>	<p>○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부과 금액의 80% 이하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p> <p>○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버린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봄</p> <p>○ 검토하겠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0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등
  - 50만원~100만원 ⇒ 200만원~1,000만원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30만원~300만원 ⇒ 300만원~1,000만원
-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등
  - 2만원~50만원 ⇒ 5만원~100만원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투기행위별 과태료기준의 60~20% 지급(생활폐기물에 한함)

###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적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 및 12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별표2]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하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200	폐기물관리법	(2) 적정처리·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1) 1톤 미만	200	300	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2) 1톤 이상 3톤 미만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3) 3톤 이상 5톤 미만	400	600	8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4) 5톤 이상	500	700	9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지 아니하고 운반	300	500	70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2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한 자 제외)									
	(1) 5톤 미만	500	700	1,000						
	(2) 5톤 이상	1,000	1,000	1,000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	100	300	5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3.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 20ℓ 이하 (2) 50ℓ 이하 (3) 100ℓ 이하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1) 20ℓ 이하 (2) 50ℓ 이하 (3) 100ℓ 이하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100	150	200	폐기물관리법	하는 경우	200	300	5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5.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30조 제3항)	300	500	500	폐기물관리법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6.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법 제30조 제4항)	100	500	5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7.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 제3항, 제41조)	300	5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8.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 제1항, 제2항)	100	300	5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9. 폐기물처리 등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3조 제1항)	100	300	50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200	400	6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0. 폐기물검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500	1,000	2,000	폐기물관리법	의 경우 (태)지정폐기물의 경우 (4)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나)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다)보관량이 75톤(50㎡) 이상인 경우 (태)지정폐기물의 경우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6) 감염성 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300	500	1,000
	11.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1,000	2,000	3,000		100	200	300	
	12. 폐기물 재생처리 시설의 시설, 장비의 개선 등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44조2, 제3항)	1,000	2,000	3,000		500	700	1,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이하	이하	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300	500	이상	이상	이상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700	이하	이하	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00	600	1,000	이상	이하	이하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700	100	이하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600	800	이하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600	800	이하		
					(나)건설폐기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300	500	7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제6호 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하는 자(법 제25조의9 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00
					(1)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500	700	1,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이하 "한한다")						
					(4)(2)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비를 기일 내 사후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700	1,000	1,000
					법	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을 받은 경우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 (감염성 폐기물은 7일)	500	700	1,000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300	500	
						이상	이상	이상	
						300	500	1,000	
						이하	이하	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300	500	이상	이상	이상
						우	300	500	1,000	이하	이하	이하
						나. 가목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300	500	이상	이상	이상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1,000	이하	이하	이하
						(1) 옹벽 및 재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500	700	이상	이상	이상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이하	이하	이하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우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한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이하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	300	300	3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자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시설을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현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	50이상 100 이하	50이상 100 이하	50이상 100 이하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50	70	100	
					17. 감시 전문기관에 감시 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현행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회복촉진에 관한 법률	1~6(생략)				자원회복촉진에 관한 법률	1~6(현행과 같음)			

“별지 1”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 기 물 관 리 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중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 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이상 3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500 이상 700 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이상 400 이하	400 이상 600 이하	600 이상 1,000 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이하	20 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만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이하	20 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만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만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5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이상 3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500 이상 700 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 이상 400 이하	400 이상 600 이하	600 이상 1,000 이하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이하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이하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이하	600	800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2)(나)	500	700	1,000
	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3항)	500 이하	700	1,000	
	500	7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 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관리법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 <sup>3</sup> )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 <sup>3</sup> )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이상 3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이상 3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나. 가목 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이상 3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용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이상 500 이하	500 이상 700 이하	700 이상 1,000 이하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이하	1,000	1,0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2)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관리법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 2)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10 이상 20 이하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이상 50 이하	20 이상 50 이하	20 이상 50 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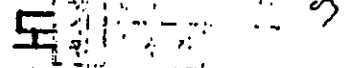
“별지 2”

[별표 2]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대상 사례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고
1. 휴지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경우	50,000원	30,000원	
2.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	100,000원	6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100,000원	60,000원	
4. 행락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200,000원	100,000원	
5. 차량 등 운반 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	500,000원	150,000원	
6.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0,000원	200,000원	

# 경 기 도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퓌로 92가 11 / ☎(0991)249-4253/FAX (0991)249-9529  
폐기물관리과 과장 박종선 담당자 김종욱

문서번호 폐관67510- 1931  
시행일자 1999. 8. 5 (년)  
(경유)  
발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선 결	228	0000	지 시	2000. 8. 5
접 일 자	11:20		결 재	
수 번 호	4013		공 략	
처 리 과	2854982			
담 당 자				

## 제 목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 시달

1. 환경부 폐청 67510-680('99. 7. 30)호의 이첩입니다.

2. 행정자치부 재경 13310-688('99.7.10)에 의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관련입니다.

3.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도로나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물레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환경부는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 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지난 6월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예산편성에 관한 협의록 거쳐 회의록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을 마련, 시달하니 2000년 1월 1일부터 신고자 포상금제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사항을 포함한 준비를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00년도 세출예산에 「쓰레기 청결보상금」 항목을 신설하고 소요예산을 확보

- 지자체별로 쓰레기투기 실태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신고건수 및 소요포상금액을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반드시 확보



폐관 67510-

(2)

1999. 8.

나. 폐기물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액을 규정

- 기준액은 시군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자극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되,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설정

- 조례는 '99. 11월까지 개정하여 2000. 1. 1부터 포상금제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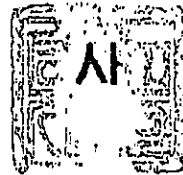
다. 방송·언론·인터넷,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

- 불법행위 발견시의 신고방법, 처리절차, 포상금액 등을 안내

붙임 :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발는곳 : 리(청소·환경보호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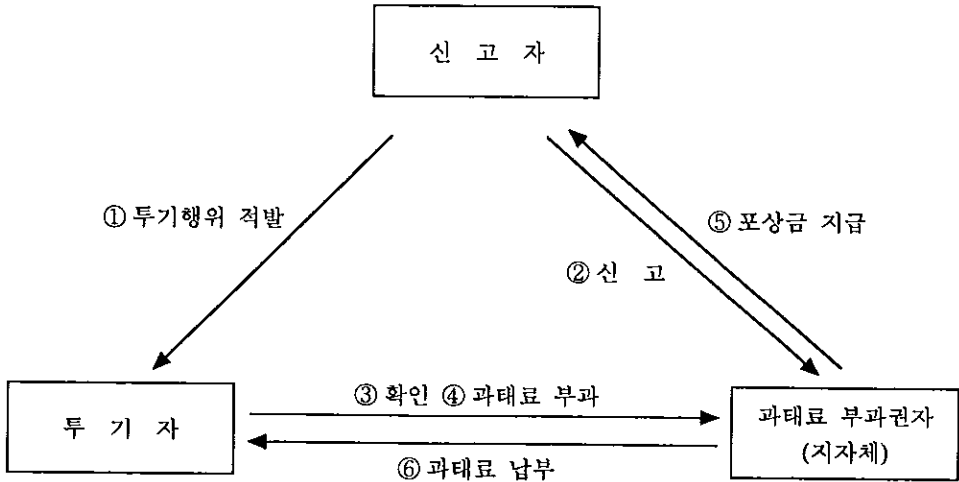


###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포상금제 실시방안 (쓰레기청결포상금제도 도입)

□ 신고포상금제 운영계획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 신고체계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신고된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

< 행위별 포상금 예시 >

(단위 : 만원)

행위	과태료	포상금 상한
○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4
○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8
○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	8
○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16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4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80